

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7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사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, 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의거 민간(비영리법인)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로써
- 나. 장애인의 학대,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·구제·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존중을 위해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(사)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재위탁으로 운영하였으며,
- 다.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전문성 있는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개요
-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·운영
 - 위탁기간 : 2021. 1. 1. ~ 2025.12.31.
 - 위탁유형 : 사무형 민간위탁
 - 소요예산 : 1,460,642천원('20년 예산안 기준)
 - 수탁자 선정방식 :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(수탁기관 적정성심의)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(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) 및 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○ 추진 필요성

- 본 위탁사무는 장애인의 차별금지,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사례관리, 장애인 학대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담, 사법지원, 교육·홍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함
- 학문적 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임

다. 민간위탁 사무내용

-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-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-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
-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·운영
-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,
「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고성호 (☎ 2133-7365)